

# 제1차 2008~201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I. 외국인정책의 추진배경
  - II.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목표
  - III. 주요 정책 과제
- 부록(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자원 투자 규모)







# 제1차 2008~201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I. 외국인정책의 추진배경
  - II.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목표
  - III. 주요 정책 과제
- 부록(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자원 투자 규모)



# 목 차

<b>I. 외국인정책의 추진배경</b> .....	1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	2
2. 외국인정책의 환경 변화 .....	3
3. 그 간의 정책 평가 .....	8
<b>II.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목표</b> .....	9
1.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	10
2. 외국인정책의 비전 및 목표 .....	13
<b>III. 주요 정책 과제</b> .....	14
1.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15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15
1-1-1.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	17
①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촉진 .....	17
②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공 .....	18
③ 국적제도 개선 .....	18
1-1-2.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	18
① 고급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 .....	18
② 우수 유학생 유치 및 활용 지원 강화 .....	19
③ 외국인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 지원 .....	20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	22
1-2-1. 지역별·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	25
① 숙련생산기능인력 도입 체계 개선 .....	25
② 숙련기능인력 도입 경로의 제한적 확대 .....	26
1-2-2. 기업 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	26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순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원 .....	26
② 단순기능인력 도입 규모 결정 방식 개선 .....	27
③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교육의 강화 .....	27
④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지원 .....	28
<b>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b>	<b>29</b>
<b>1-3-1. 외국인 체류 지원 강화 .....</b>	<b>30</b>
① 외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	30
② 외국인을 위한 민원처리 서비스 강화 .....	30
<b>1-3-2.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b>	<b>31</b>
① 외국인을 위한 교통·주거 환경 개선 .....	31
② 외국인을 위한 복지·의료 환경 개선 .....	31
③ 외국인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	32
④ 외국인을 위한 문화·여가 환경 개선 .....	32
<b>2. 질 높은 사회 통합 .....</b>	<b>34</b>
<b>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b>	<b>34</b>
<b>2-1-1. 다문화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b>	<b>35</b>
①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 .....	35
② 사회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 .....	36
③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37
<b>2-1-2. 참여 및 소통 강화 .....</b>	<b>38</b>
① 외국인 지역사회 참여 확대 .....	38
②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	38
<b>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b>	<b>39</b>
<b>2-2-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b>	<b>42</b>
①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강화 .....	42
②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 .....	43
③ 보육 등 사회서비스 강화 .....	43
④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	44
⑤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	44

2-2-2.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	45
① 취업교육 및 취업정보제공 강화 .....	45
②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영농정착 지원 강화 .....	45
2-2-3.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	46
① 위장결혼 예방 및 단속 강화 .....	46
② 결혼이민 과정의 불법행위 및 인권침해 방지 .....	46
③ 결혼 전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증진 .....	47
<b>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b>	<b>48</b>
2-3-1.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	50
①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 .....	50
② 이민자 자녀 학교생활 지원 .....	51
③ 이민자 자녀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	52
2-3-2.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	52
① 이민자 자녀 사회적응 지원 .....	52
② 이민자 자녀 자립능력 배양 .....	53
<b>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b>	<b>54</b>
2-4-1. 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지위와 제도 정비 .....	56
① 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지위 강화 .....	56
② 중국·구소련 동포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	56
③ 동포의 입국문호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 .....	57
2-4-2.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 .....	57
① 동포의 국내 생활환경 개선 .....	57
② 동포의 사회적응 지원 .....	58

<b>3.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b> .....	59
<b>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b> .....	59
<b>3-1-1.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b> .....	60
① 비자발급 단계의 불법체류 사전 예방대책 강화 .....	60
②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조사 역량 강화 .....	61
③ 불법고용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 조성 .....	61
<b>3-1-2.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리 강화</b> .....	62
① 집단거주지역 내 생활환경 개선 .....	62
② 집단거주지역 내 외국인관리체계 강화 .....	63
<b>3-1-3.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b> .....	63
① 일탈행위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 .....	63
<b>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정보 관리</b> .....	64
<b>3-2-1.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 및 위험외국인 관리</b> .....	65
① 국경관리 과학화 및 선진화 .....	65
② 총체적 외국인관리능력 강화 .....	65
<b>3-2-2.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b> .....	67
① 국가간 정보공유 활성화 .....	67
② 양자·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	67
③ 국제 인적교류 확대 .....	68
<b>3-3.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 업무 수행</b> .....	68
<b>3-3-1. 국적 업무의 신속성·전문성 확보</b> .....	70
① 귀화·국적회복 절차의 신속 진행 .....	70
② 귀화적격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	71
<b>3-3-2. 귀화허가 시 검증기능 강화</b> .....	71
① 국적제도 개선을 통한 검증기능 강화 .....	71
② 귀화적격 심사 과정에서 검증기능 강화 .....	71



4. 외국인 인권응호 .....	72
4-1.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 .....	72
4-1-1.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 .....	73
① 외국인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	73
② 차별적 제도·관행의 개선 .....	74
4-1-2.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 강화 .....	74
①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성 제고 .....	74
② 정부 내 구제기능의 실질화 .....	75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강화 .....	76
4-2-1. 보호 관련 적법절차 준수 .....	77
① 인권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	77
②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	77
4-2-2. 고충상담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 .....	77
① 고충해결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 강화 .....	77
②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	78
4-2-3. 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 .....	79
① 보호시설 확충 .....	79
② 경비·계호 업무의 전문성 제고 .....	79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	80
4-3-1.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체계 구축 .....	81
① 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81
② 난민인정제도 개선 .....	81
4-3-2.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82
① 난민에 대한 초기 정착지원 대책 마련 .....	82
②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82
<b>부록 1.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b> .....	84
<b>부록 2. 자원 투자 규모</b> .....	100



# I

## 외국인정책의 추진배경

1.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의의
2. 외국인정책의 환경 변화
3. 그 간의 정책 평가



#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 1-1. 외국인정책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 외국인에 대한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 부여는 이민 허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국·체류·귀화 허가 등을 통해 이루어짐

## 1-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국가계획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할 필요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책문제에 대한 대응 및 외국인정책의 국가전략적 활용을 위해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의의

## 2. 외국인정책의 환경변화

### 2-1. 국가간 인구이동의 세계적 흐름

#### ■ 전세계적 인구이동의 증가

-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이민의 시대' 도래
  - ※ '05년 전세계적으로 이민자<sup>1)</sup>는 약 1억 9천여만명으로 세계 인구 64억7천만명의 약 3%를 차지 (World Demographics Trends, UN, 2007)
- 인구이동이 대부분 '경제부국'으로 집중
  - ※ '05년 전체 이민자 중 약 60%(1억1천5백만명)가 유럽·미국 등에 집중

#### ■ 국가별 정책대응

- 지식기반경제의 고도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우수인재 유치
  - 각 국은 지식·정보력을 갖추고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문호 확대 및 국내정착 등 유도
    - ※ 고급기술인력유치 프로그램(영국), 이민법 개정으로 고급인력에게 정주권리 부여(독일)
  - 해외사무소를 통한 우수인재 영입 활동
    - ※ (싱가폴) 전세계 10곳에 인력관리사무소를 두고 첨단기술인재 영입
  - OECD 평균 순두뇌유입비율은 1990년 1.0%에서 2000년 1.6%로 0.6% 증가했고, 이민자 중 고학력자 비율도 동 기간 31.2%에서 35.4%로 증가

※ 순두뇌유입 비율 = 
$$\frac{\text{국내거주 외국태생 고학력 노동인구수} - \text{해외거주 국내태생 고학력 노동인구수}}{25\sim 65\text{세 국내노동인구 수}}$$

1) UN은 '1년 이상 의도적 체류를 동반하는 인구이동' 을 이민으로 파악

- **인구이동의 증가에 대응하여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강화**

- 9.11 테러를 계기로 각 국은 출입국심사에 바이오정보를 활용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
- 불법이민과 국익위해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구이동 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가간 협력을 강화
- 사회갈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기조 유지
  - ※ 미국은 '07년부터 단속강화로 불법체류자 약 100만명 감소, EU는 '08. 10월 불법이민자 엄격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민과 난민에 관한 유럽협정'에 합의

- **이민자 유입에 따른 갈등 관리 강화**

- 이민자 증가에 따른 갈등·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이민자에게 언어·문화 등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 강화
  - ※ 프랑스 이민자 소요('05년), 호주 인종 간 폭력사태 발생('05년) 등
- 이민자가 단순한 지원대상이 아닌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통합정책 추진

〈 주요국가 이민정책 사례 〉

- 이민자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어 건국 초기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형성한 국가

미 국			호 주		
'71~'90	중남미 이민자 증가	저소득층 증가로 사회비용 부담 증가	'73	백호주의 폐지	다민족 다문화 사회 선언
'90	전문인력 우대정책	개인능력에 따른 우대	'73~'91	유색인종 이민금지	인종간 갈등 고조
'01	9·11 테러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 계기			
'06	뉴아메리칸 T/F	범정부적 이민자 통합정책 추진	'05	인종간 폭력사태	이민시민권부로 개편('07) - 사회통합정책 강화

- 외국인력도입, 결혼이민자 증가 등을 계기로 정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한 국가

프랑스			독 일		
'45~'73	북아프리카 인력 유입 정주화 진행	저소득층 확대로 사회비용 증가	'55~'81	고용허가제 인력의 정주화 진행	저소득층 확대로 사회비용 증가
'97	사회통합 정책도입	소극적 사회통합 - 이민자 소요발생('05)	'82	이민정책 전환	인력도입 중단 정주자 사회통합
'06	외국인입국동화법 제정	사회통합교육 이수 의무화 전문인력 유치 강화	'05	신 이민법 시행	사회통합교육 이수 의무화 전문인력 유치강화

## 2-2. 외국인정책을 둘러싼 국내 환경 변화

### ■ 체류외국인의 증가 및 다양화

-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 도래

- 2007년 말 체류외국인은 1,066,273명으로, 인구 대비 2.2%를 차지

※ 체류외국인은 '97년 386,972명에서 10년 사이에 2.75배로 증가하였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2년 15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증가의 원인은 생산직중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제 결혼의 증가, 동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 등

- 체류유형의 다양화

- 체류외국인의 구성이 종래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민자·유학생·투자가 등 활동유형별로 다양화

《'08. 6월말 체류유형별 외국인 분포》

방문취업동포 297,329명(26.0%), 단순기능인력(비전문취업 등) 212,778명(18.6%), 결혼이민자 118,421명(10.3%),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68,441명(6.0%), 전문인력 29,895명(2.6%), 영주자격자 17,809명(1.6%), 투자자 8,376명(0.7%)

- 체류외국인의 출신국가·민족·취업분야·체류기간 등이 다양해지면서 정책 대응도 복잡다기

### ■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의 순유출 상황 지속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 심화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7년 1.26명, OECD 평균 약1.63명)로 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으로 정점에 도달 후 점차 감소 전망

※ 총인구 전망(통계청, '06년) : '05년(4,814만명) → '18년(4,934만명) → '30년(4,863만명)  
→ '50년(4,234만명)

-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 3,619만명(총인구 중 73.4%)을 고비로 점차 감소 전망

※ 생산가능인구 전망(통계청, '06년) : '05년(3,453만명, 총인구중 71.7%) → '16년(3,619만명, 73.4%) → '20년(3,551만명, 72.0%) → '50년(2,242만명, 53.0%)

- 인구의 순유출 상황 지속

- 국적이탈·상실자가 귀화·국적회복자보다 많은 만성적 인구순유출 현상 지속

※ 지난 10년('98년~'07년) 간 108,973명의 인구 순유출 발생

- 고급인력의 해외진출과 해외잔류 경향 심화

- 해외 우수 유학생의 현지취업 선호 등으로 귀국 기피

※ 재미유학생 중 이공계 박사 잔류율 : 31.3%('96년~'99년) → 46.3%('00년~'03년)

- 국내 취업 중인 고급인력의 해외진출 선호를 나타내는 두뇌유출지수<sup>2)</sup>는 지난 10여년 사이 급격히 악화

※ '95년 7.53(48개국 중 4위)에서 '06년 4.91(61개국 중 40위)로 하락

## ■ 다문화사회 진입

-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이민자 증가

- 결혼이민자는 2007년말 기준 146,508명으로, 전년도 124,459명에 비해 17.7% 증가

※ 총 146,508명 = 국적취득 44,291명 + 미취득 102,217명

- 결혼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2007년 17,997명으로 전년도 12,924명에 비해 39.3% 증가

2) 두뇌유출지수(Brain Drain Index)는 0에 가까울수록 해외진출 경향이 강함



-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 증가

- 2002년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취학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 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

- ※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08. 4월 18,778명으로 '06. 4월 7,998명에 비해 2년 만에 10,780명 증가 (교과부, '08년)

-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상반된 반응

- 다문화사회는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의미있게 부각된 사회로서, 우리 사회도 국내 정착 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사회에 진입

- ※ '다문화사회'에 대해 사회현상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지향해야 할 가치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입법태도로 볼 때 전자가 타당

- 이에 대해 단일민족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배타적 정서와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문화·생활양식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혼재

- ※ UN 인종차별 철폐협약 위원회는 외국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단일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월성 극복 등을 권고 ('07. 8. 17.)

### 3. 그 간의 정책평가

#### ■ 통제 관리 중심의 정책 기조

- 과거 안보를 우선시하여 정립된 외국인에 대한 통제·관리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외국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미흡
  -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 해외 인재와 자본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정책의 기조를 '전략적 개방'으로 전환할 필요

#### ■ 새로운 정책문제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 미흡

-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이민자 사회통합 등 종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정책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적시성 있는 대응 미흡
  - 새로운 문제의 신속한 발견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 중장기적·종합적 대응 미흡

- 부처별·분야별로 단기적 필요성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해 외국인에 대해 온정주의적으로 접근 또는 산업수요에 대해 임시방편적으로 대응
  -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종합적 접근 필요
- 다양한 정책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상당하나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 간 역할이 불분명하여 효율적 정책추진에 한계
  - 관계 기관 간 역할 정립을 통한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

# II

##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 · 목표

1.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2. 외국인정책의 비전 · 목표



# 1.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를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인재가 모여드는 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서 외국인정책을 추진
- 외국인정책은 미래 우리 사회의 인적 구성을 결정하는 정책으로서 사회적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므로 “중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추진

## 1-1.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개방을 통한 이익과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국 문호의 개방 대상과 방식을 결정

이익은 인력부족 해소, 지식·정보의 확산과 같은 경제적 기여 등을, 비용은 주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정착 과정에서 저소득층 전략 또는 국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의미

- 전문인력 또는 투자가,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특히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치 및 국내 정착 장려
-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정주를 지양
  - ※ 현행 단순기능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는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
- 능력이 비슷할 경우, 사회통합의 용이성 및 한민족 역량 강화 차원에서 동포 우대
  - ※ 현재 동포에 대해서는 비동포에 비해 출입국 편의 및 취업자유 확대

- 결혼이민자·난민 등 개방에 따른 이익과 비용의 비교형량이 곤란한 대 상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 존중

## 1-2.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 ■ 국내 정착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비

각국의 경험상 다문화사회는 이민자(이민자 자녀 포함)의 사회부적응과 저소득층 전략, 인종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별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문제에 직면

※ 차별은 제도 또는 구체적 차별행위에 의한 **직접적 차별**과 차별적 인식(편견)에 의한 **간접적 차별**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측면보다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과 국민의 차별적 인식의 해소(다문화 이해 증진)를 동시에 추진
-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은 정책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 지원의 대상·내용·방식을 전략적으로 설정
  - 국내에 정착할 이민자를 중점 지원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 지는 자부터 우선 지원
  - 다른 복지서비스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한국어, 사회 이해교육 등을 우선 지원
  - 지역 특성과 지역 거주 이민자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관련 세부계획(서비스 전달기관의 지자체 이양 등에 관한 구체적 추진일정, 방법 등)은 '09년도 시행계획에 포함
  - 중앙정부는 중장기적 방향 설정, 중앙-지방-민간 간의 협력체계 구축, 평가 시스템 개발 등으로 효율성 강화

- 국민의 다문화 이해 증진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행동 양식의 정립을 목적으로 추구

## ■ 개방된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외국인 인권 보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외국인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불합리한 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
-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난민인정 및 지원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

### 1-3.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

#### ■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체류질서 확립

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국익위해 인물의 입국 증가, 불법체류자의 증가, 외국인 범죄의 증가 등

-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외국인정책의 실효성 확보
- 국경관리의 과학화, 외국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익위해 인물의 입국 차단 및 외국인범죄 등에 효과적 대처

## 2. 외국인정책의 비전 및 목표

비 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정책  
목표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중점  
과제

-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정보 관리
- 3-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 III

## 주요 정책 과제

1.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옹호





# 1.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1-1 우수인재 유치로 통한 성장동력 확보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글로벌 경영 등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

우수인재는 “특별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운 지식·정보·기술 등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자”로 정의

- 우수인재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인재 유치 경쟁(war for talent) 심화

〈 주요 경쟁국의 고급인력 유치전략 〉

싱가포르	•우수인재 패스(The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 - 입국시부터 완전 자유취업 허용, 동반가족에게 동일혜택 부여
홍콩	•'06. 6월부터 「우수인력 유치 이민 프로그램」 실시 •점수제에 의해 해외 및 중국 우수인재 적극 유치
유럽 (EU)	•비유럽권 고급인력 유치 확대를 위해 「블루카드 제도」 도입('11년부터 추진) •EU 내 취업활동 자유, 장기체류 및 가족동반권 등 보장

- 우리나라는 2008년 6월말 외국인 취업인력(54.2만 명) 중 전문인력의 비중은 5.5%(2.9만 명)에 불과(회화강사를 제외할 경우 2.2%)

※ 미국은 취업이민의 41.1%('04년), 캐나다는 경제이민의 84.8%('04년), 영국은 취업허가 발급의 37.4%('02년)를 전문인력이 차지(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06년)

※ OECD도 한국경제에 효용이 크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고급 외국인력의 적극 활용을 우리 정부에 권고 (한국경제보고서, '07. 6월)

## ■ 출입국관리제도는 본질적으로 통제적 성격이 강하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인 운영 필요

- 현행 비자제도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다양한 인재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우수인재의 유인 기능이 미흡
- 또한,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등으로 우수인재의 영구 유치 곤란

## ■ 나아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 필요

- 우수인재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높은 구인 비용 등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기 곤란한 점 해소
-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수인재로 양성된 유학생의 국내 활용이 저조한 점 개선

〈 체류유학생 증가 및 취업비율 〉

(법무부 2007, 단위 :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유학생총수	7,288	9,705	14,407	20,683	30,101	41,780
취업자격변경	9	17	16	45	119	235
취업비율	0.1%	0.2%	0.1%	0.2%	0.4%	0.6%

- 우수외국인에게 공직사회의 문호를 개방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글로벌화를 전략적으로 추진

### 1-1-1.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

#### ①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촉진

-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 도입(법무부)
  -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위한 창업비자 도입
  - 세계 유수의 기업 근무 경력자 및 우수대학 졸업생이 초청자 없이도 입국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구직비자 도입
  - 일정 금액(예 : 50만 달러) 이상을 일정기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 간접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비자 발급
- 기업 수요에 부합하도록 비자제도 개선(법무부)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해외투자기업)에서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 전문인력에게 주재비자 발급
    - ※ 불법 인력도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급
  - 전문인력 취업비자의 발급 요건 완화 (경력요건 단축 등)
  -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종 출현 시 취업 허용 여부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결정
- 세계적 우수인재에게 차별화된 혜택 부여(법무부)
  - 전문인력을 전문성과 직무를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산업전략상 유치 필요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영주비자 발급 등 차별화된 혜택 부여

-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없이도 학력·경력·소득 등을 종합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비자를 발급하는 점수제 도입

## ②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공

- 우수인재의 근무처 이동 자유 확대(법무부)
  - 근무처 변경 시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우수인재 배우자의 취업절차 개선(법무부)
  - 배우자에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 변경 허용

## ③ 국적제도 개선

- 우수인재에 대해 제한적 이중국적 용인(법무부)
  -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 등에게 원국적 포기 의무 완화 등 사실상 이중국적 용인
- 우수인재에 대한 일반귀화요건 완화(법무부)
  - 필기시험 면제 및 귀화심사기간 단축

### 1-1-2.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 ① 고급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

-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체제인 「Contact Korea」 운영 (지경부, 외교부, 노동부, 법무부)
  - KOTRA 해외무역관에서 고급인력 발굴 후 관련정보 기업 제공
  - 국내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지원센터」(KOTRA)에서 노동부, 법무부 등이 공동으로 취업상담·알선, 출입국지원, 생활정착 지원 등 종합지원

- 온라인 비자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System) 도입(법무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자추천인이 추천한 인재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여부의 검증을 간소화하는 비자추천인제 도입
  - 온라인 비자추천·심사 시스템을 통해 추천된 인재 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 고급인력 해외 현지 채용 박람회 개최(지경부,외교부,교과부)
  - 국가별·기술분야별 인재분포 파악 후 연차별 박람회 개최 및 관련 현지 홍보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활성화(중기청)
  - 기업의 해외기술인력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
    - ※ 인력발굴 수수료(1인당 최대 3백만원 한도), 입국항공료, 체재비(1인당 연간 1천만원 한도) 지원
  -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도입인력의 자격요건 정비 및 인력 발굴 대상국가 다변화 추진
- 해외학자 유치지원 강화(교과부)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해외학자 유치·활용
    - ※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전공학과 개설, 개별 교원초빙,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등

## ② 우수 유학생 유치 및 활용 지원 강화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교과부)
  - 신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증원 ('07년 133명 → '08년 745명)

- 다양한 방식의 유학박람회 개최 및 개최지역 다변화
- 한국유학 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 기능 및 관리 강화
- 유학생 취업범위 확대(법무부)
  - 국내 대학 인문계 학사학위 취득 유학생에 대해서도 자격요건 충족 시 경영·금융 등 전문직종 분야에 취업 허용
    - ※ 이공계 학사에 대한 취업 허용('06. 7월), 인문계 학사에 대한 연구원, 해외영업원 등 12개 직종에 한정된 취업 허용('08. 7월) 실시
- 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노동부,지경부)
  - 고용지원센터와 교육청·대학 간 연계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알선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 '국내 해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유학생과 기업인의 만남의 장 제공

### ③ 외국인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 지원

- 외국인 공직채용 확대(행안부,법무부)
  - 외국인 공무원 채용 범위를 현행 계약직에서 정무직·별정직으로 확대
  - 외국인 공무원에게 체류 편의와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거주비자 발급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비자발급 요건 완화(교과부,법무부)
  - 모국어 국가 국민의 학력요건 완화(학사 →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 공용어 국가 국민에게도 제한적 허용 추진(교사자격증 소지자)

## 〈현행 체류자격 및 취업가능자격 분류〉

- 현행 체류자격은 알파벳 A계열부터 H계열까지 대분류 8종 및 세부적으로는 37종에 이르는 자격으로 구성
- 〈전문인력 체류자격〉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을 포함

비취업 자격	A 계열	〈외교·공무 등 : A-1 ~ A-3〉 ※ 외교관, 외국정부의 공무원, 외교적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자 등
	B 계열	〈사증면제·무사증입국 : B-1 ~ B-2〉 ※ 비자면제협정 또는 특정 비자면제 국가 국민으로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자
	C 계열(단기)	〈취업·영리 목적 외의 방문 : C-1 ~ C-4〉 ※ 친지방문, 관광, 견학, 회의참가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D 계열	〈유학·종교·기업투자 등 : D-1 ~ D-10〉 ※ 유학, 문화예술 공연, 언론취재, 종교활동, 기업투자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취업가능자격	E 계열	〈전문직업·비전문직업 등 : E-1 ~ E-10〉 ※ 교수, 회화지도, 예술흥행,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등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F 계열	〈거주·영주 등 : F-1 ~ F-5〉 ※ 친척방문자, 가족동거,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격 취득자 등
	H 계열	〈관광취업·방문취업 등 : H-1 ~ H-3〉 ※ 워킹 할리데이, 방문취업제도에 따른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기 타	G 계열	〈인도적 고려사유 존재등 : G-1〉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고학력화 등으로 인해 생산직 인력부족 문제 지속

- 단순기능직의 경우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 상당 부분 해소

〈 단순기능인력 증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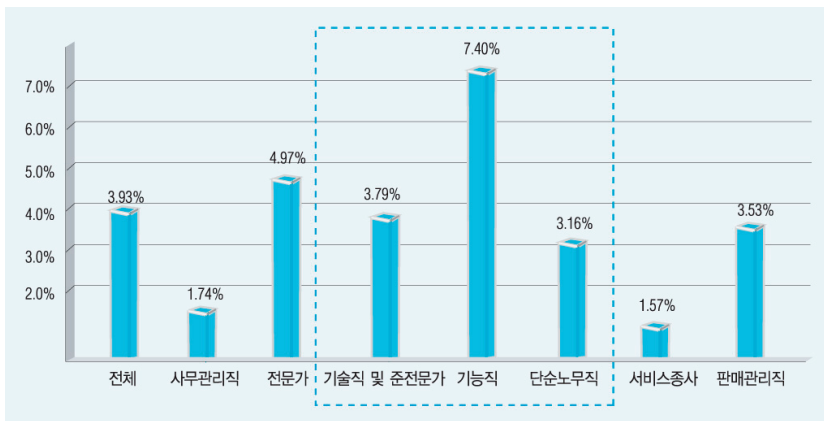
(법무부 2008, 단위 : 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총체류자	9,684	18,069	188,516	219,672	173,549	231,773	442,677	508,078

※ 단순기능분야 취업자격을 소지하였던 불법체류자 포함 ('07. 3월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단순기능인력 급증)

- 반면, 생산직 내에서도 기능직 부족률은 여전히 높음

〈 중소기업 직종별 인력 부족률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 실태조사, 2007년



〈 직종별 인력 구성 및 부족률 〉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사무 관리직	전문가	생산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 관리직
				기술직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 노무직		
현인원	2,208,312	522,994	63,001	251,122	494,619	779,409	26,425	70,742
부족인원	90,444	9,228	3,298	9,888	39,505	25,459	421	2,585
부족률	3.93	1.74	4.97	3.79	<b>7.40</b>	3.16	1.57	3.5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보고서, 2007〉

■ **숙련기능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제도 불충분**

- 단순기능인력 중 숙련기능인력으로 발전한 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충분한 공급에 한계
  - 현재는 단순기능인력으로 취업한 경력이 있어야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의 즉시 도입이 곤란

【 숙련 생산기능인력의 자격요건 및 처우 】

▶ 단순기능인력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F-2)자격 부여

- ① 단순기능인력으로 총 5년 이상 국내 취업, ②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격증 취득 또는 일정 임금 이상 수령, ③ 생계유지를 위한 자산 보유, ④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구비, ⑤ 품행 방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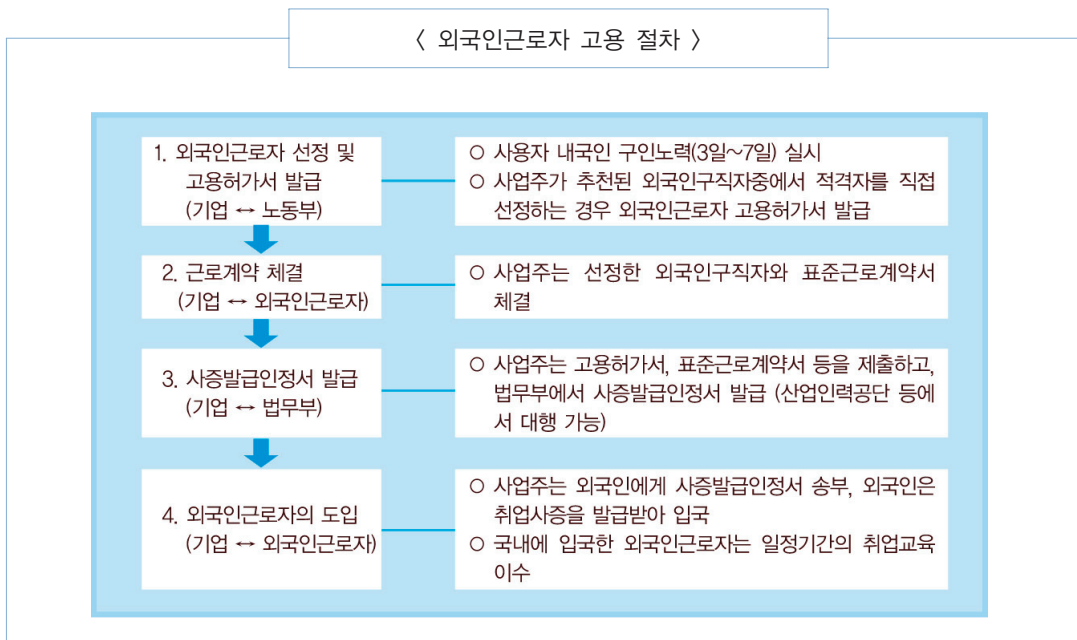
▶ 거주(F-2)자격으로 5년 체류 시 영주(F-5)자격 취득 허용

■ **단순기능인력의 도입 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 등의 인력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다양한 외국인정책 목표의 반영 미흡**

- 현재 외국인력 고용 제도는 선발 과정에서 기업 수요 반영 부족, 고용관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등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고, 생산성에 비해 외국인력 고용부담이 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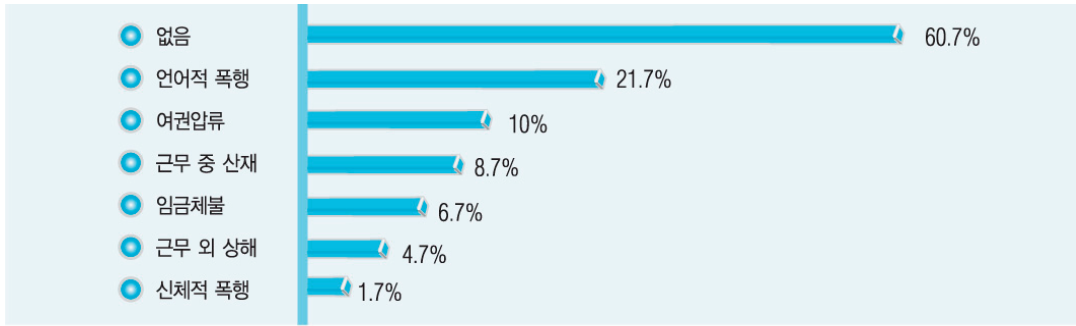
생산성	임금	총 고용비용
89%	87%	97%

- 또한, 인력 도입 규모 및 국가별 배정 인원 결정 단계에서 산업구조 조정 · 불법체류 방지 · 사회통합 등 외국인정책의 다양한 목표에 대한 고려 미흡



## ■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필요

-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사업장의 영세성에 따른 취약한 근로환경에 노출
- 외국인근로자의 사건·사고 유형은, 주로 근무 중 언어폭력·여권 압류·산재·임금체불·근무 외 상해·신체 폭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체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일수록 발생 비중이 높음



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방안연구, 2007

(’05. 1월 태국인 근로자 노말핵산 중독사고, ’08. 1월 이전 화재사망사고 발생)

- 한국어능력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근로 및 생활상의 고충 등을 적절히 해결하기 곤란

## 추진 계획

### 1-2-1. 지역별·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 ① 숙련생산기능인력 도입 체계 개선

- 거주(F-2)자격 요건 정비(법무부)
    - 자립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술·기능자격 또는 임금수준 요건 현실화
    - 취업기간 요건을 고용허가제의 재고용 절차 개선과 연계하여 변경
- ※ 현행 요건 : 5년 이상 취업 및 일정한 기술·기능자격 또는 2,900만원 이상의 임금

## ② 숙련기능인력 도입 경로의 제한적 확대

- 전문대학 외국인유학생의 제한적 취업 허용 검토(법무부)
  - 이공계 전문대 졸업생에 대해 취업기피 지역 또는 직종의 기술·기능직 취업 허용
    - ※ 취업 허용분야, 기술·기능 자격요건, 임금수준 요건, 쿼터 등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기업·노동계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

### 1-2-2. 기업 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순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 도입(노동부)
  - 선발 기준으로 한국어 시험 외에 기능 보유 여부 및 경력 등 고려
  - 특수분야의 기본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실적 및 자격수준 등을 점검하여 선발
-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 여건 강화(노동부,법무부)
  - 고용지원센터 방문만으로 고용 관련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 노동부와 법무부 간 정보연계로 유사 신고의 중복 문제 해소
  - 재고용 절차 개선, 근로계약기간 제한 완화로 안정적 고용 여건 강화
- 고용비용의 합리화(노동부)
  - 표준근로계약서 개선,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비용 징수 기준 마련 등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 분담 제도화

- 숙식비 공제 한도 설정, 수습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 합리화
- 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 임의화 등 사업주의 의무가입 보험 합리화

## ② 단순기능인력 도입 규모 결정 방식 개선

-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연계 강화(법무부, 노동부)
  -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중장기 외국인력 도입 기조 결정 및 매년말 결혼이민자·유학생·불법체류자 등의 취업현황과 취업전망 등 분석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외국인력 도입 기조 및 취업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 송출국가별 도입 규모 배정 시 불법체류율 반영 확대(노동부)
  - 송출국가별 인력도입 규모 배정 시 불법체류율 반영 비중 강화
  -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가 일정기간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어 시험 중단, 송출중단 등 조치

## ③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교육의 강화

- 외국인근로자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환경 관리 강화(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 및 개선
  -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확인 강화
  - 외국인근로자 취업 전후 안전보건교육 강화 및 자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 제작·보급

-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노동부)**
  - 자국어로 된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교부 및 건강진단 시 통역 지원
  -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등 중점 확인
-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노동부)**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포함, 방문 기술지원(연평균 4회)
    - ※ 작업환경개선 지도, 보건교육·건강상담 실시, 특수건강진단 수수료 지원 등

#### ④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법무부,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 고충상담서비스 제공
  -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한 상담 강화
  -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현지 취업정보 제공 등)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지자체 이양 추진 (노동부,행안부)**
  - 사업안정화, 재정 확보를 전제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 ※ '08년 현재 5개소(서울, 안산, 의정부, 김해, 마산)
  -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고충상담, 한국어 교육, 무료진료 등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은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입 촉진 및 외국인의 충분한 능력발휘를 위한 필수요건

- 국가간 인구 이동은 임금격차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환경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
-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국내생활 만족도는 낮은 편이고, 이에 따라 가족동반 비율도 저조

※ 외국계 투자기업 임직원 대상 국내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26.5%), 보통(46.2%), 불만족(27.3%) 등으로 조사(KOTRA, 2007)

※ '08. 6월말 현재 총 전문인력 29,895명 중 2,625명 (8.8%)만이 가족 동반

### ■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생활전반에서 불편을 경험

- 국내에서 다국어 기반의 생활기반시설이나 행정서비스는 미흡

※ 「국내체류외국인 기초실태 조사」(월드리서치, '07)에서 대상자의 52%가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 ■ 외국인들은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

- 특히, 교통·주거·교육·여가 및 문화생활 등의 분야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

※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로 교통(54.9%), 주거(31.6%), 교육(26.1%), 여가문화생활(22.1%) 환경 등을 제기 (KOTRA 외국계투자임직원 대상 설문, '07)

## 추진 계획

### 1-3-1. 외국인 체류 지원 강화

#### ① 외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3자 통역서비스 확대(법무부)
  - 응급의료센터, 소방서(119), 경찰서 등과 연계 서비스 확대
    - ※ 1345를 통해 영어·중국어·불어 등 17개 외국어로 외국인관련 민원안내·전화상담 및 통역 서비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하여 3자통역서비스 제공 중)
- EBS의 국립국어원 주관 한국어 교육과정 확대 운영(문화부)
  - 현행 중급과정에서 초급과정으로 확대 운영

#### ② 외국인을 위한 민원처리 서비스 강화

-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및 방문민원 최소화(법무부,노동부)
  -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s)를 통한 출입국 등 온라인 민원처리 활성화(전자민원 대상 확대 등)
    - ※ 현재 G4F(www.hikorea.go.kr.)를 활용하여 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고용변동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전자민원업무 처리 가능

#### 〈 G4F를 통한 전자민원 처리 〉



투자, 노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입국 전부터 체류, 출국까지 필요한 모든 행정 및 생활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를 통하여 안내받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음 (한/영/중/일 4개 언어제공)



## 1-3-2.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 ① 외국인을 위한 교통·주거 환경 개선

- 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확대(국토부)
  - 지하철 돌발 상황 영어안내 방송 확대
  - 시내버스 영어안내 방송 확대 (지자체 재정,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철도승차권 요금·좌석번호 등의 영문병기 추진
    - ※ 현재 철도승차권은 출발·도착지 이외의 정보를 모두 한글로 표시
- 외국인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국토부)
  - 외국인 투자지역 인근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시 전용주거단지를 할애하여 외국인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

### ② 외국인을 위한 복지·의료 환경 개선

- 영주권자 등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복지부)
  - 영주권자에게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방안 검토
    - ※ 현재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가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대상자 확대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장애인 복지혜택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영주권자에게 확대 적용
  -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인장애인 증명서 발급 등 검토
    - ※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만 시행

-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진료편의 제공(복지부)**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외국인환자 언어소통 등 진료 편의를 위한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확대

### ③ 외국인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교과부)**
  - 외국인학교 중 일정요건 충족 시 국내학력 인정
    - ※ '08. 3월 현재 총 47개교 외국인학교 운영 (총 10,493명 재학)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학교 지원근거 강화
    - ※ 학력 인정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교과부)**
  - 제주도·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교육기관 유치·운영 지원
    -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개교('08. 3월)
  -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등 검토

### ④ 외국인을 위한 문화·여가 환경 개선

- **문화시설의 다양성 부족과 편중문제 완화(문화부)**
  -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 「주한외국인 국악문화학교」 운영 등을 통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 외국인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 등 외국인 친화적 문화시설 조성

- 문화 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 해소(문화부)

- 다국어로 제작된 한국문화 소개자료 보급

- ※ Facts about Korea, Welcome to Korea(7개국어), 문화가이드북(17개국어)

- 다문화 홈페이지 구축으로 한국문화와 다문화관련 정보 제공

- ※ 디브러리 다문화포털 서비스 구축('09년 서비스 제공 예정)

-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자료실 설치·운영

- 취약계층 외국인의 여가환경 개선(문화부)

- 결혼이민자 가족·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체험 여행기회 및 공연·전시 등 관람기회 제공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연 1회)

- ※ 출신국별 축구경기·민속경기 개최, 국가별 문화음식부스 운영

## 2. 질 높은 사회통합

###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이하 “이민자”)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와 생활양식 필요
  - 이민자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그 외모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사회로부터 부당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에 노출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차이는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이 없을 경우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
  - 다양한 문화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가치 있는 사회자본으로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가능
- 이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이민자를 실질적인 사회주체로 인정하는 시민의식의 함양 필요
- 또한, 일반 국민과 이민자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사회관계의 형성을 통해 상호 간 이해를 증진할 필요

## 2-1-1. 다문화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 ①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

-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교과부,복지부)**
  - 개정교육과정('07. 2월 고시)을 반영한 도덕·사회 등 교과서 집필
    - ※ 타문화이해·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 등을 반영
  - 관련교과, 재량·특별활동 시간에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
  -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
    - ※ 이주민 강사를 활용, 초·중등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07년 6,805명, '08년 3,930명)
-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07. 12월 고시)에서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교과부)**
  - 귀국자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특성과 배경 고려
    -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 놀이를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 **다문화이해 관련 교재·지도자료 발간(교과부)**
  -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다문화 교육내용이 반영된 교과서 및 교사용 기초 교재·교양교재 개발
  - 우수사례 중심의 다문화 이해교육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 ※ 비디오, CD형태로 학교에 보급하고, EBS 등 방송매체와 연계

- 유·초·중등 교사 등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교과부,문화부)
  - 교원 연수과정에 '다문화이해 과정' 개설 및 연수과목에 '다문화 문화교육' 관련내용 포함
  - 예비교사의 다문화 관련 인식·태도 조기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대학 등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 '다문화 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운영
    - ※ 다문화교육 우수교사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표창 및 홍보
  - 교사·정부부처·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 체험·타문화 접목 교육 실시
  -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사, 한국어교사 등 대상자 특성별로 교안개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② 사회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다문화체험 학습장 운영(문화부,복지부)
  - 도서관 등 각급 문화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외국문화 체험 행사 확대
  - 일반 청소년 대상 「다문화이해·반(反)편견 프로그램("다른 빛깔, 같은 우리")」의 수정·보완
    - ※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인종 등에 대한 편견 깨기, 간접적 차별경험(역할극) 등 실시
  - 초등 도덕·사회교과(세계화 및 다문화, 인권, 평등 등)와 연계된 다문화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세계시민학교」 등 청소년 대상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실시

- **지자체 주민과 공무원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행안부)**
  - 지자체 공무원교육원·주민자치센터를 다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
  - 외국인주민·지역민·공무원 대상 전국 순회 소양교육 확대
    - ※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5개부처 합동 「순회교육」 실시('07. 4월)
- **다문화교육 강사 확충(문화부,법무부,복지부)**
  - 다문화 프로그램 기획자 및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확대
    - ※ 각급 교육연수기관, 초·중·고교, 공공기관 등의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로 파견

### ③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다문화 관련 포럼·세미나 등 개최(행안부,법무부,문화부,복지부)**
  - 「다문화 정책 포럼」,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포럼」, 「지방의 국제화 포럼」,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개발을 위한 국제 포럼」, 「다문화 가족 및 지원활동가 전국대회」 등
- **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 공모전 등 추진(문화부,법무부,복지부,교과부)**
  - 공익광고, 다문화 특집다큐멘터리, 국제회의 영상물 제작·방영
  - 다문화교육 관련 논문 공모, UCC공모전, 체험수기 공모 등 다문화 인식 제고 행사 추진

## 2-1-2. 참여 및 소통 강화

### ① 외국인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행안부, 법무부)
  - 외국인주민 기초생활 실태 조사 시 '생활실태' 등 항목 추가
    - ※ '07년은 지역·국적·성별 등으로만 구분하여 실시
  - 외국인주민의 취업률, 지역사회 참여율, 교육률, 범죄율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사회통합지수' 개발

### ②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문화 행사·축제를 세계인 주간에 실시 (법무부, 행안부)
  - 관계부처 공동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등
- 지역별 이주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 지원 (문화부)
  - 축제, 생활문화, 문화체험, 전시·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 국제결혼의 증가로 국내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 본격 유입

- 2007년 전체 결혼건수 345,592건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38,491건으로 국제 결혼비율이 약 11.1%에 이룸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자 7,930명 중 40.0%인 3,172명이 외국인과 혼인 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국제결혼이 일반화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단위 : 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혼인건수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국제결혼건수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국제결혼비율	4.8%	5.2%	8.4%	11.4%	13.6%	11.9%	11.1%

〈통계청, 혼인통계 결과, 2007〉

- 2007. 12월 기준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는 총 146,508명
- 이들 중 국적취득자는 44,291명, 국적 미취득자는 102,217명
- ※ 국적취득자 = 행안부 전수조사('07. 4월 기준) + 법무부 귀화허가자('07. 5월 ~ '07. 12월)

### ■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은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막대한 사회통합비용 초래

- 장기간 한국에서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능력 부족

-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의사소통 곤란

※ 혼인귀화 신청자 100명을 대상으로 (모의)귀화필기시험을 실시한 결과 42%만이 합격하였으며, 베트남·캄보디아의 경우 각각 18.5%, 20%만이 합격(법무부, '07)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부족은 각종 차별·인권침해에 대한 방어능력 부족과 자녀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입국초기부터 체계적·단계적인 교육 필요

- 결혼이민자 중 상당수가 일상생활과 가족·사회관계에서 어려움 호소

- 결혼이민자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따른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으로 자녀양육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애로

〈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

대상	항목	외로움	문화 차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언어 문제	가족 갈등	주위 시선·태도	음식/기후
1,044명		23.2%	15%	14.7%	11.4%	11.8%	3.7%	2.6%	3%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2006〉

## ■ 취업정보 및 체계적인 직업교육 부족으로 경제활동 참여율 저조

-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지만, 취업에 대한 욕구는 높음
  - 2006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34%만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미취업자 중 82%가 취업의향이 있다고 밝힘
- 미취업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지원책으로,
  - 마땅한 일자리 알선(40%),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25%), 한국어교육(13%), 배우자나 그 가족의 이해와 지원(12%) 등 선호

■ **불법 결혼중개, 간단한 결혼이민비자 발급 절차 등으로 혼인의 진정성 확보가 어려워 가족형성단계부터 위기 요인 잠재**

-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결혼이민비자의 특성상 내면의 문제인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어렵고, 이를 악용하는 위장결혼 사례 속출
- 위장결혼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쌍방향의에 의한 위장결혼 외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위장결혼 유형도 발생

〈 위장결혼 단속 실적 〉

(단위 :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7월
알선 브로커	148	298	393	318
위장결혼자	1,876	3,314	3,635	4,112

〈경찰청, 2007. 7월〉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모집과정의 탈법행위,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와 국제결혼에 대한 쌍방의 이해부족 등으로 외국인배우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가족관계 파탄사례 증가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현황 〉

(단위 : 건,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이혼 건 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인과의 총 이혼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3	1.3	2.4	3.3	5.0	7.1
증 감	-	298	1,236	878	2,002	2,548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40.6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44.5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증 감 률	-	7.9	13.2	2.5	23.8	33.7

〈통계청, 2008. 4월〉

## 2-2-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 ①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강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 실시(법무부,교과부,문화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
  - 한국어, 다문화사회 이해의 교육내용·교육과정·강사·교재·교육기관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설정
  -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복지부,행안부,문화부,교과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지방문화원 등에서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확대
  - 한국어강사 양성 및 교재 개발·보급
    - ※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 개발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결혼이민자 포함
    -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 저학력 성인에 대한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대상 문화예술체험(연극·영화·미디어 등) 및 교육기회 확대

## ②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

-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생활정보 등 제공(행안부)
  - 각 지자체별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구성을 고려하여 다국어 지원
- 다국어판 정보 매거진 발간·배포(복지부)
  - 5개 언어로 생활정보, 정책정보 등 제공(분기 1회)
-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 구축(복지부)
  - 통·번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통역요원 파견 지원
-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법무부,복지부)
  - 특수외국어 능통 직원과 국가별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를 통한 고충상담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지도사 등을 통한 상담 강화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상담서비스 강화
    - ※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대상에 결혼이민자·자녀 포함('07년)

## ③ 보육 등 사회서비스 강화

-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복지부)
  - 출산 1~2개월을 앞둔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복지부)
  -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방문교육·상담서비스 제공
    - ※ '08년 10,240 가정 지원

#### ④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 강화(행안부,복지부, 법무부,문화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국어문화원, 지방문화원, 사회복지법인, 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간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자조집단 운영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
    - ※ 지역단위 서비스제공 허브 역할
  - 주민자치센터에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 확대
    - ※ 한국어·취업교육, 상담 및 한국문화 체험기회 부여
- 지역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복지부,행안부,법무부)
  - 지역특성 및 지역 거주 외국인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서비스 전달기관의 지정·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지역별 사업안정화, 재정 확보를 전제로 서비스 전달기관의 지자체 이양 단계적 추진
    - ※ '08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개, 다문화사회통합 거점 대학 20개

#### ⑤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 자조모임 지원 및 정책모니터단 운영(법무부,복지부)
  - 출신국가·거주지역별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결혼이민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견 적극 수렴
    - ※ 정기적인 만남의 장 활성화 지원 및 권역별 대표자 전체회의 개최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시부모 자조모임 운영 및 교육 실시(복지부)
  - 가족 상호간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 결혼이민자·배우자·시부모·부부관계·부모자녀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

## 2-2-2.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 ① 취업교육 및 취업정보제공 강화

- 결혼이민자 취업형·창업형 자립모델 개발·보급(노동부,복지부)
  -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출신국가별 「직종 개발 - 교육 훈련 - 일자리」 연계 체계 마련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고용 - 복지 서비스 연계 추진
- 결혼이민자에 적합한 취업지원(노동부,복지부,행안부)
  -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통·번역사 등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교육 실시
  - 정부기관·지자체·지역교육청·보육시설 등과 일자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

### ②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영농정착 지원 강화

- 영농기술교육 및 생활농업인으로서의 정착지원사업 강화(복지부)
  - 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기술교육, 영농컨설팅, 영농기반지원 등 농촌지역 정착 지원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수준별 영농정착 지원(농식품부)
  - 지역의 선도 여성농업인을 활용한 1:1 맞춤형 영농교육 등
    - ※ '이주여성농업인 육성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농촌 정착 수준에 따른 단계별 이주여성 농업인력 육성 지원정책을 추진

## 2-2-3.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 ① 위장결혼 예방 및 단속 강화

-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 강화(법무부)
  - 위장결혼 또는 이혼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초청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중점 심사
- 결혼이민비자 체계 개편 검토(법무부)
  -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새로운 비자체계 검토
- 입국 후 생활실태 모니터링 강화(법무부)
  - 혼인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입국 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위장결혼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
    - ※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엄정 처벌
- 위장결혼 피해방지 활동 강화(법무부)
  - 국제결혼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된 위장결혼 피해 사례를 수사·단속에 활용
  - 수사과정 등에서 밝혀진 위장결혼 수법을 분석하여 피해방지 방안을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안내책자 등을 통해 홍보

### ② 결혼이민 과정의 불법행위 및 인권침해 방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조기 정착(복지부,법무부)
  - 등록제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08. 6. 15. 시행)



- '미등록 결혼중개업체'의 중개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
- 결혼중개업체의 현지법령 미준수, 허위정보 제공행위 등 중점 단속
-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복지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전 결혼중개업자 사전교육 강화
  - 교육을 위한 전문 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법무부)
  -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의 침해, 예속상태·인신매매와 유사한 관행 등

### ③ 결혼 전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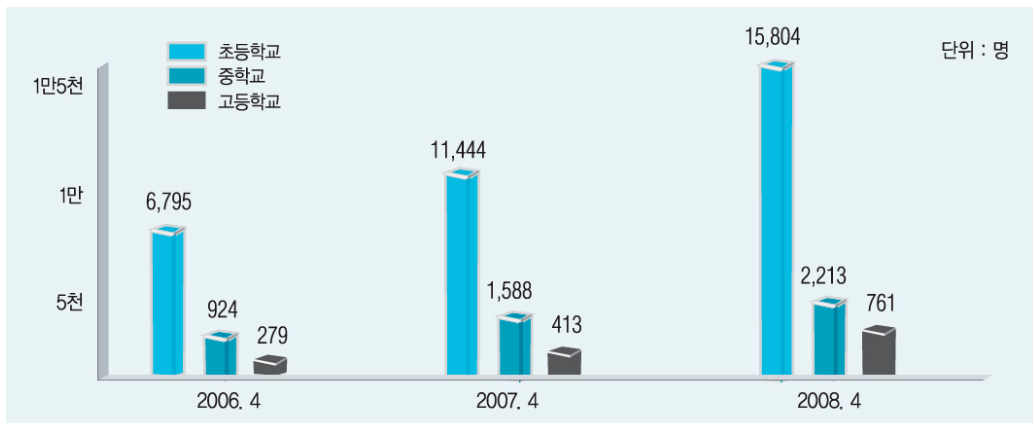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실시(여성부,법무부,복지부)
  - 국제결혼 관련 법규, 양성평등 및 가정폭력 예방, 국제결혼 시 신상정보 확인, 위장결혼 피해 방지 등 교육
- 국제결혼 전후 한국인배우자에게 결혼준비교육 실시(복지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 실시
- 예비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제결혼 관련 정보제공(복지부,외교부)
  - 몽골, 캄보디아 등 현지에서 콜센터 운영 등
  - 입국전 '사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재외공관에 배포

## 배경 및 필요성

## ■ 이민자 자녀의 지속적 증가 및 건전한 정체성 확립 지원 필요성 대두

-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취학연령에 도달
  -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8년 4월 18,778명으로 2006년 4월 7,998명에 비해 2.3배 증가

〈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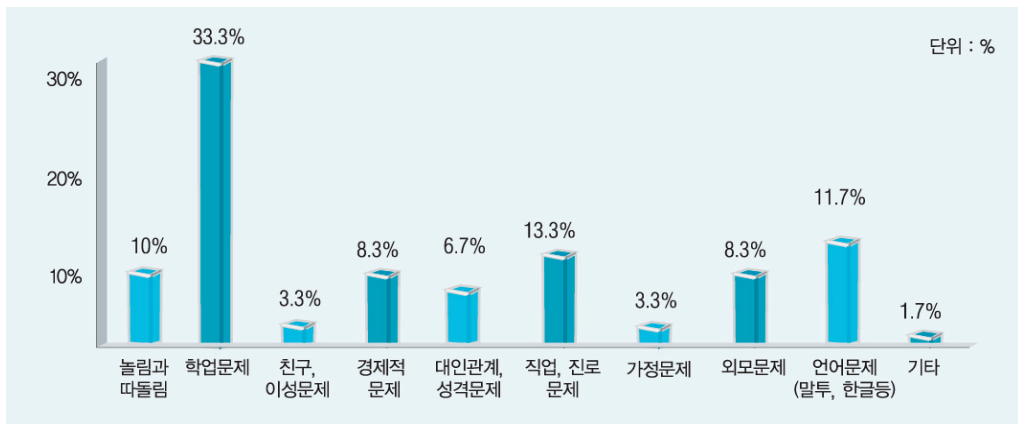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 2008

-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의 연령별 평균인원은 초등학생의 2배에 해당
  - ※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6세 이하는 33,140명 (행정안전부, '08. 5월)
- 이민자 자녀는 다른 외모·문화·말씨, 집단 따돌림 등에 따른 심리적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 상당

## ■ 이민자 자녀의 학습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 필요성 증가

-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엄마의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기초학습이 곤란한 경우 발생
- 얼굴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 생활에서 소외받는 사례 발생

〈 결혼이민자 2세의 유형별 고민거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60명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대상 설문)

## ■ 미진학·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취업 희망 이민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부족

-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하는 이민자 자녀 발생
- 정상적으로 교육을 마치더라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 빈곤의 악순환 발생 우려

## 2-3-1.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 ①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

-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교과부,복지부)
  -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방과 후 학교 등의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용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아동·청소년 이용기관에 강사파견 등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에서 결혼이민자 중 우수자를 선발·교육하여 강사로 파견
- 취학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교과부,문화부,복지부)
  - 유치원 유아 중 다문화 유아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놀이 중심의 교육지원
  -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를 위한 평가·발달 지원 프로그램 등 교육서비스 제공
  - 언어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교육 지원
- 한국어 및 기초학습 교재 개발·보급(교과부,문화부)
  - 학생의 언어능력과 학습능력 등을 고려한 수준별 한국어 교재 및 지도용 참고자료 등 개발

## ② 이민자 자녀 학교생활 지원

-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강화(교과부)**
  -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 다문화교육정책 연구, 교사 연수 등을 위한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교과부·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협의체 운영 및 교육청 사업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 초등학교(저학년)대상 언어·인지 진단도구 개발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 지원
-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교과부)**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 및 보충교재 지원
  - 초중등예비교사를 활용한 방과후 멘토링 지원
- **다문화교육 담당 전문가 양성·배치(교과부,문화부)**
  - 대학 또는 시·도 교육연수원 등에 전문 연수과정 설치
  - 다문화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 등을 다문화교육 전담교사, 이중언어 교사로 양성
    - ※ 지역 상황, 학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배치
  - 다문화교육 전담교사, 이중언어교사 등의 한국어교육 능력 강화
-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교과부)**
  -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연구학교·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보급
    - ※ '07년 현재 12개 학교 지정(유치원 2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진로상담 강화(교과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진학 상담 강화

### ③ 이민자 자녀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 학교단위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행복교실' 운영(교과부)
  - 한글, 한국문화이해, 자녀교육상담 등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 제고
-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교과부)
  - 학교별 상담주간을 지정·운영, 자녀의 학교생활·교육 안내

## 2-3-2.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 ① 이민자 자녀 사회적응 지원

- 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복지부)
  - 다문화 청소년 실태조사 및 한국어 교육·한국사회문화 입문 프로그램(디딤돌 과정) 개발
-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에게 교육기회 확대(교과부)
  -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는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 ※ 아시아공동체학교, 아힘나평화학교 등 7개 기관에 재정 지원('07년)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 모델 개발·확산(복지부)
  - 청소년 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생활권 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문화청소년 관련 종합정보 제공 강화(복지부)**
  -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일반청소년 및 관련전문가 등에게 법률·교육·복지정보 제공
-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양성(복지부)**
  -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③ 이민자 자녀 자립능력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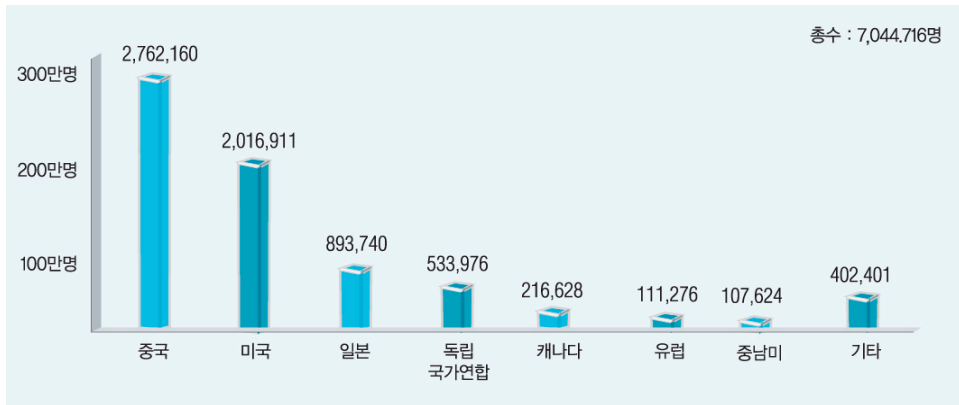
-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 대상에 이민자 자녀 포함(복지부)**
  - 취업 전 직업능력 향상과 직장·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 ※ 전국 28개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 지원
- **이민자 자녀를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에 활용(교과부)**
  - 연수·교육 이수자를 학교 내 상담자, 자원봉사자, 원어민 보조강사 등으로 활용

## 배경 및 필요성

### ■ 동포는 언어·문화의 동질성으로 인해 다른 외국인에 비해 국내 사회 적응이 용이

-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명의 재외동포(이 중 외국적동포 약 400만명)가 거주

〈 재외동포 현황 〉



외교통상부, 2007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시행(’99년), 방문취업제 시행(’07년)으로 국내 체류하는 동포는 지속 증가
  - ’08. 6월말 전체 체류외국인 1,145,660명 중 동포는 419,485명으로 36.6% 차지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

(’08년 6월말 기준, 단위 : 명)

총 수	구 분	방문취업	재외동포	방문동거	기타
419,485		297,329	38,226	15,360	68,570



## ■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내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비 차원에서 동포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필요

- 동포의 지식과 경험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외에 모국과의 연대감을 고취할 수 있는 법적지위 보장 필요
- 중국·구소련 동포의 경우, 방문취업제를 통하여 국내에서 주로 단순 노무분야에 취업하고 있어 국내 노동시장 잠식 문제 야기
  - ※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는 자유로운 출입국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나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중국·구소련 동포들은 주로 ‘방문 취업제’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

## ■ 체류동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포의 체류환경 개선 및 사회적응지원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미흡

-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법제도에 관한 정보 취득 및 체류 편의에 대한 요구가 상당
-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의 경우 친지·지인 등 사적관계를 통한 취업 및 사회적응에 한계

### 〈 동포정책 관련 해외사례 〉

- **일본** : 동포들에게 “정주자” 자격을 부여하여 자유입국 및 국민에 준하는 취업 활동 허용
- **중국** : 공안부(출입경관리국) 지침에 의거 동포에게 영주권에 해당되는 “정거” 자격 부여
- **독일** : 기본법, 국적법, 이민법을 통해 국적·영주권을 부여, 적극 포용
- **중남미국가·이스라엘·터키** : 이중국적을 부여, 동포와의 연대 유지
- **미국·호주** : 과거 시민권자 및 그 자녀에 대해 이민비자 발급 등을 통해 우대

## 2-4-1. 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지위와 제도 정비

### ① 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지위 강화

- '재외동포(F-4) 자격'을 중국·구소련 동포에게 적용 확대(법무부)
  - 중국·구소련 동포 중 단순 노무 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선진국 동포와 동일하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확대(법무부)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체류 시, 원칙적으로 영주자격 부여
    - ※ '08. 7.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에게 일정조건 하에 이중국적 계속 보유 용인 추진(법무부)
  - ※ 국민여론에 기초하여 신중 추진

### ② 중국·구소련 동포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 연간 입국인원의 합리적 조절(법무부,노동부)
  - 적정 동포입국 인원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무연고동포의 입국을 확대하고, 연고동포의 초청인원은 국내 노동시장 등을 고려 제한적으로 운영
-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으로의 취업 장려(법무부,노동부)
  - 내국인 기피 및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농업, 지방 중소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에 따라 가족초청 허용, 영주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동포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와 대체로 구인난이 심각한 제조업 보다는 건설현장·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는 경향

- 동포인력 급증에 대응, 취업실태 파악 등 관리 강화(법무부,노동부)
  - 동포의 취업신고의무 강화 등을 통해 취업실태 파악
    - ※ 미신고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 ③ 동포의 입국문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

- 사증발급관련 브로커 개입 차단(법무부)
  - 사증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등 사증발급절차 개선
- 입국 전 취업정보 제공(노동부,외교부)
  - 동포들의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동포고용을 희망하는 국내업체의 정보 제공
- 동포의 취업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고용기회 보호(법무부,노동부)
  - 허용업종 외 취업자 및 취업사실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2-4-2.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

### ① 동포의 국내 생활환경 개선

- 국내 체류 관련 제도 개선(법무부)
  - 각종 거래행위에 요구되는 거소사실증명 발급 기관 확대
    - ※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나, 시·군·구 까지 확대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사업 추진(법무부)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동포 온라인 법률상담 활성화
  - 재외동포 대상 “법과 생활” 책자 발간·배포(매년 1회)

## ② 동포의 사회적응 지원

- 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운영(법무부)
  -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각종 상담 및 국내생활정보 제공
-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강화(행안부)
  - 영주 귀국 동포 등에 대한 자매결연, 후견인제도 등 시행
  - 외국인주민 기초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 동포 지원 내용 포함
  - 총액인건비 및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역거주 동포 수 포함 검토
-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노동부)
  - 지역 고용지원센터와 민간단체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 지원

### 3.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배경 및 필요성

##### ■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 2003년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한 합법화 조치로 불법체류자가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 증가
- 2007년 말 현재 전체 체류외국인 1,066,291명 중 223,464명이 불법체류하고 있어 불법체류비율이 21%에 이룸

〈 불법체류자 증감추이 〉



법무부, 2007년

-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인권침해 사례발생, 외국인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갈등과 불안 요소로 작용

##### ■ 불법체류자 발생 사전방지 및 단속을 위한 인프라는 미흡

- 불법체류자의 신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증발급, 입국심사, 체류관리 등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

- 불법체류자 단속은 불법체류자의 직접 감소효과 외에 잠재적 불법체류자의 입국방지, 자진출국 유도 효과 등을 갖는 중요한 불법체류 대책
  - 그러나,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이 충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관계부처간 협력이 불충분
- 불법체류자 고용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 세금회피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 문제임에도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상당
  - 이러한 인식은 불법체류 대책의 실효성을 저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적극적인 개선 필요

### ■ 일부 외국인 집단거주지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유입 증가

- 일부 외국인 집단거주지는 값싼 주거비용, 언어소통의 용이, 취업정보 공유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들이 다수 유입
  - 이러한 집단거주지를 방치할 경우 치안 불안, 국민과의 갈등 발생 등 우려

### ■ 연예인(E-6), 유학생(D-2) 등 일부 외국인들의 불법취업, 일탈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예술홍행자격으로 입국한 일부국가 여성들의 성매매와 일부 유학생들의 불법취업 사례 등이 지속 발생

## 추진 계획

### 3-1-1.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 ① 비자발급 단계의 불법체류 사전 예방대책 강화

- 출입국정보시스템과 영사민원시스템(e-consul) 연계 확대(법무부,외교부)

- 외교부 e-consul과 출입국정보시스템의 연계 확대로 초청자와 피초청자 관련 정보를 비자심사 업무에 활용

※ 139개 공관에 출입국정보시스템과 영사민원시스템 연계('08. 9월)

- 불법체류 다발국가와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추진(외교부, 법무부)

- 한·방글라데시와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08. 7월)

※ 방글라데시 국민의 경우 '08. 6월말 국내 총체류자의 77%가 불법체류 중

-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의 국내 불법체류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구축

## ②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조사 역량 강화

- 불법체류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법무부)

- 사건송치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 관계에 있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여권법 위반죄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수사범위 확대

- 조사·단속 인프라의 연차적 보강(법무부)

- 향후 5년간 단속인력 및 단속장비(차량 등)의 단계적 보강
- 광역 기획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위한 '이민수사대' 신설 검토
  - ※ 일본의 경우 법무성 직속 「특별단속반」을 구성, 불법체류자 수를 '02년말 22만여 명에서 '07말 현재 14만여 명으로 감소

- 관계부처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정례화(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실시
  - ※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총 4개월 이상 실시

- 범정부적 『불법체류 대책 5개년 계획』 수립(법무부, 관계부처 공동)
  -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 ※ 불법체류대책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보고
- 정부부처 간 불법체류정보 공유(법무부,복지부,노동부,경찰청)
  - 외국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법체류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인 체류자격 및 체류만료일자 등 불법체류 정보 공유

### ③ 불법고용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 조성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계도(노동부,법무부,중기청)
  - 연 2회 지도·점검 실시(5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계도
-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법무부)
  - 상습·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 가중처벌 및 고발기준 엄격 적용

## 3-1-2.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리 강화

### ① 집단거주지역 내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 집단거주지 개발 등 사회 안정화 지원(행안부)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대한 조직·인력 등 지원 검토
  - 외국인주민 집거지 내 자조조직 육성과 자원봉사체계 구축
  -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집거지 개발 시 특별교부세 지원



## ② 집단거주지역 내 외국인관리체계 강화

-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할 행정기관 정례회의 활성화(법무부,행안부 등)
  - 검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지자체 등 협의체
- 이주민 자율조직의 건전한 육성 및 네트워크 지원(행안부)
  - 지역사회 이주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
- 정기적인 합동 실태조사 실시(행안부<지자체>,식약청 등)
  - 불법유통 식품, 무허가 건축 등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지도

### 3-1-3.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

## ① 일탈행위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

- 예술·홍행자격 소지자에 대한 관리 강화(법무부)
  - 연예기획사 및 공연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허위초청 사실 적발 시 범칙금 상한액 부과, 형사처벌
-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 대한 체계적 체류관리(법무부,교과부)
  -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3자간 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 공유
  - 유학비자 발급 심사 시 대학의 유학생 관리실태 반영
-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외국인 유학생 관리 현황 반영(교과부)
  - 대학 측의 자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유도

## 배경 및 필요성

### ■ 9.11 테러 이후 각국은 인적 이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 국경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국가간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바이오정보 인식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초국가적 범죄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

### ■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문제인물의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범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

- 출입국심사 강화에 따른 선량한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한 심사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필요성 증대
  - ※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 인식기술을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제도 운영 국가 증가
- 외국인 신원확인 정보의 부족, 인적정보 관리 시스템의 비효율성 등으로 동일인 확인에 중대한 장애
  - 현행 외국인의 신원확인 은 여권·외국인등록증의 사진에 의존하기 때문에 위·변조, 멸실 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
  -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공동이용 곤란

### ■ 국가간 인구이동과 관련한 초국가적 문제 해결에는 국제적 협력 필요

- 테러·밀입국·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는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국가간 정보 및 정책경험 공유 필요

### 3-2-1.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 및 위험외국인 관리

#### ① 국경관리 과학화 및 선진화

- 자동출입국심사제도 도입(법무부)
  - 신속·간편한 수속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
- 위험인물 탑승방지를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검토(법무부)
  - 출발지국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사전심사 후 위험인물일 경우 항공사에 통보하여 입국을 사전 차단
    - ※ 현행 APIS(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는 항공사로부터 미리 전송 받은 승객정보를 분석, 위험인물이 국내 '도착 시' 입국을 저지하는 방식인데 비해,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는 출발지 국가의 '발권단계'에서 탑승을 저지하는 제도

#### ② 총체적 외국인관리능력 강화

- 외국인의 지문정보 등 수집 및 활용 추진(법무부)
  - 외국인 신원 확인을 위한 기본정보 수집을 위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지문정보 등 제출 의무화
  - 기 수집된 문제인물의 지문정보 DB 등과 대조하여 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인 범죄 수사 등에 활용

《지문정보 등 제출 의무화 관련 해외 사례》

- 미국 : '04년부터 비자신청·입국심사 시 얼굴사진 촬영과 지문채취 실시, '07년부터 두 손가락에서 열 손가락 지문으로 확대
- 일본 : '07.11월부터 입국 시 얼굴사진 촬영과 지문채취 의무화
- 영국 : '07년 말부터 비자신청 시 얼굴사진 촬영과 열 손가락 지문채취 의무화
- EU : '08.1월 출입국 시 얼굴사진 촬영과 지문채취를 의무화하는 『EU 출입국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년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 외국인 신원정보표준 DB 활용 유도 및 통합정보분석체계 구축 검토  
(법무부,관계부처 공동)
  - 성명·생년월일·국적 등 외국인 신원정보 표기 표준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활용 유도
  - 표준화된 신원정보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외국인정보를 연계·분석하는 통합정보분석체계를 구축, 소관별 행정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자외국인등록증 발급 검토(법무부)
  - 전자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통해 위·변조방지, 자동출입국심사 및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보안성 강화를 위해 발급기관 일원화(조폐공사 위탁 등 검토)
-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검토(법무부)
  - 위·변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불법행위(소위 대포폰·대포통장 개설 등)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에 온라인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 3-2-2.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 ① 국가간 정보공유 활성화

- 인터폴 도난·분실여권(SLTD)정보 연계 활용(법무부,외교부,경찰청)
  - 입국심사 전에 미리 인터폴의 도난·분실여권 정보 검색을 통해 위험인물 등에 대한 적발능력 강화
    - ※ SLTD : Stolen & Lost Travel Document
- 문제인물의 국제이동 감시·차단을 위한 RMAS 가입 추진 (외교부,법무부)
  - 도난·분실여행문서 사용자 적발을 위해 APEC 회원국 간 유효여권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 사용국간 24시간 연락센터 운영
    - ※ RMAS(Regional Movement Alert System) : APEC 전체회원국 간 분실·도난 여권 정보공유를 통해 위·변조여권 행사자 등 적발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② 양자·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 이민당국간 고위급 회의 확대(법무부)
  - 해외 이민당국과 정책 공조를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 현재 중국·일본·몽골·태국·필리핀과의 고위급 회의를 미국·캐나다 등으로 확대
- 이민분야 국제회의 참여 확대(법무부)
  -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해외 이민정책 동향 파악
    - ※ 인신매매 방지 발리회의(Bali Process), ASEM 이민국장회의, 한태평양 이민정보회의(PACRIM) 등

### ③ 국제 인적교류 확대

- 이민연락관 파견 확대 검토(법무부)
  - 테러혐의자 사전 인지, 불법입국기도자 탐승 방지 등을 위해 주요국가 국제공항에 이민연락관 파견
- 해외 이민당국 및 국제기구와 직원 교류 확대 검토(법무부)
  - 홍콩과의 상호 연수프로그램을 미국·네덜란드·몽골 등으로 확대
  - 국제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국제이주기구(IOM) 등에 직원 파견
- 개발도상국 이민당국자 교육프로그램 운영(법무부)
  -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이민부처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장기 협력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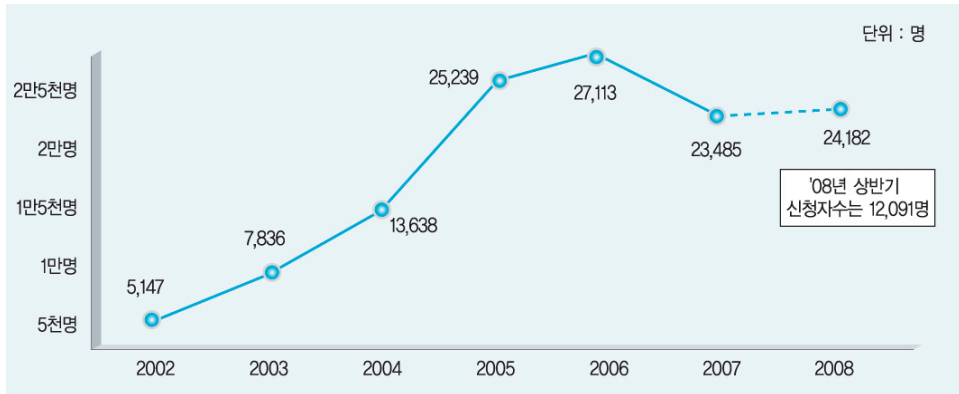
## 3-3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 배경 및 필요성

#### ■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 증가

- 2007년 국적취득 신청자는 23,485명으로, 2002년의 5,147명에 비해 약 4.5배 증가
  - 외국국적을 지닌 결혼이민자가 2002년 34,710명에서 2007년 110,362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향후 혼인귀화 신청자 수 지속 증가 예상

〈 귀화국적회복 신청자 수 증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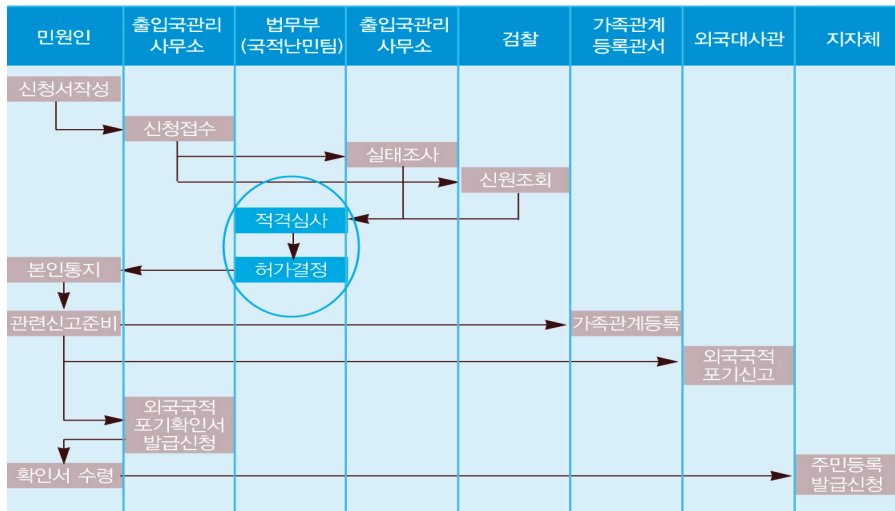
법무부, 2008년

※ '08. 6월말 현재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 건 수 : 12,091건

■ 국적민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적심사 절차개선 필요

- 국적취득 신청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심사를 요하는 업무의 특성, 전담직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심사에 장기간 소요
  - ※ 혼인귀화 1년(유자녀)~2년(무자녀), 일반귀화 1년6개월, 국적회복 2년
- 법무부의 귀화필기시험 등 귀화적격심사의 전문성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 제기

〈 국적업무처리 절차 〉



## ■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검증 기능 강화 필요

- 귀화 수요가 미미했던 과거에 만들어진 현행 국적제도는, 귀화제도의 악용가능성 예방 및 양질의 인구 확보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
  - 상대적으로 국적취득이 용이한 간이·특별귀화 제도가 장기체류 방편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위장결혼, 가족관계 서류 위조 등의 범죄행위 유발
    - ※ 간이귀화는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이었던 자의 자녀, 특별귀화는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기간 요건이 일반귀화보다 짧거나 없음
  - 일정기간 거주요건 등이 충족될 경우 개인의 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있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건전한 국민 확보 기능 미약

### 추진 계획

#### 3-3-1. 국적 업무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 ① 귀화·국적회복 절차의 신속 진행

- 국적 관련 시스템 정비(법무부,대법원,경찰청)
  - 대법원·경찰청·국가보훈처·외교통상부 등과 전산망을 연계한 국적 통합시스템의 활용으로 국적심사 신속화
  - G4F 등 인터넷으로 국적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 향상과 민원 처리 신속화 및 효율화



- 필기시험을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임(법무부)
  - 귀화 필기시험을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권역별)에서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및 심사기간 단축

## ② 귀화적격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 국적 필기시험 문제 출제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법무부)
  - 전반적인 시험관리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시험문제는 외부 전문기관에 출제 의뢰하고 문제 은행으로 관리
- 기본소양에 관한 표준교재 발간(법무부)
  - 필기시험 문제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문제 출제

### 3-3-2. 귀화허가 시 검증기능 강화

#### ① 국적제도 개선을 통한 검증기능 강화

- 국적취득 심사 강화(법무부)
  - 한국어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등에 대한 검증 강화
    - ※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국적취득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도입(과제 2-2-1-① 참고)
-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 검토(법무부)
  - 일정기간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 허가하는 방안 도입 검토
    - ※ 현재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국내거주 시 귀화 가능

#### ② 귀화적격 심사 과정에서 검증기능 강화

- 본국에서의 범죄경력 여부 심사(법무부)
  - 귀화허가 신청서류로 본국의 범죄경력 자료를 제출받아, 귀화허가 요건인 '품행 단정' 판단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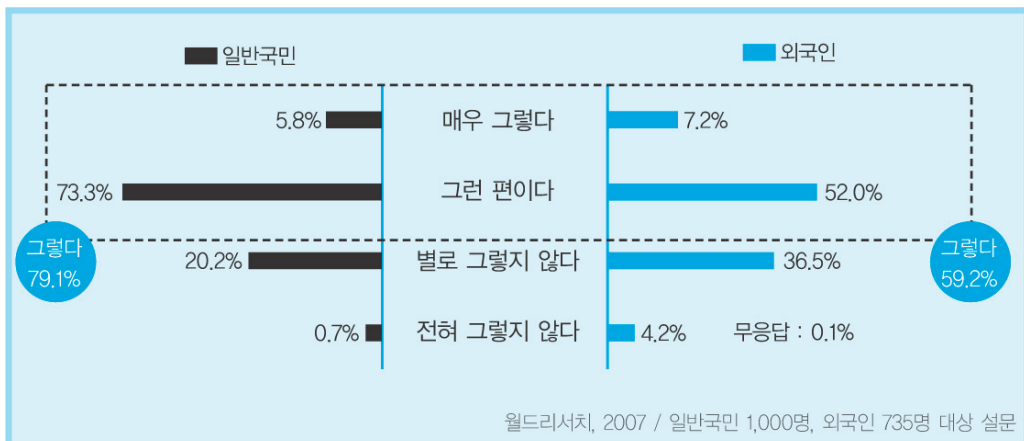
## 4. 외국인 인권응호

### 4-1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

#### 배경 및 필요성

#### ■ 외국인은 그 특성상 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쉽고, 이에 대한 방어능력 부족

- 외국인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각종 인권침해를 받기 쉽고 구제절차의 활용이 곤란
-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가입국임에도 교육·복지·고용·문화 등 사회전반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는 것으로 국민과 외국인들이 인식



■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가 국민과 같지는 않으나,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

- 외국인 인권 문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별(평등권 침해)의 문제
-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성” 판단기준의 재정립 필요
- 최근의 외국인 인권 침해는 국가에 의한 침해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 및 고용관계에서의 사인 간 침해문제가 중요하게 부각

■ **외국인은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피해상담 및 구제기관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곤란**

- 차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구제 기능 활성화 필요

**추진 계획**

**4-1-1.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

**① 외국인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 적극적 차별시정을 위해 법령 및 제도 정비(법무부)
  - 인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외국인 인권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법령 정비

## ② 차별적 제도·관행의 개선

- 인종·국적 등에 따른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법무부)
  - 결혼이민·유학·동포·영주·전문인력·단순노동 등 분야별 「사회통합 정책 외국인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차별적 제도·관행 점검
  -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정부 내 공론화 및 제도개선 추진

### 4-1-2.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 강화

#### ①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전국지원시스템 구축(여성부,법무부,복지부)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다국어 상담 제공
    - ※ 베트남어 등 8개 국어
  - 이주여성긴급지원 지역센터를 통해 방문통역상담 서비스 제공
    - ※ '08년 4개 권역별 지역 센터 지정
  - 전국 범죄피해자센터와 연계한 보호·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요원 및 방문교육지도사 등을 통한 상담 강화
  -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 환경 조성 및 2차 피해방지 방안 마련

- 가정폭력 피해 외국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여성부)
  -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 긴급보호, 의료·법률서비스, 출국 등을 지원하는 이주여성쉼터 운영
  -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거주·자활을 지원하는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설치·운영
-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지원(법무부,노동부)
  -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에게 구제절차 활용을 위한 체류 허용
  - 성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에게 즉시 사업장변경 허용

## ② 정부 내 구제기능의 실질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인권침해 신고 접수(법무부)
  - 체류외국인의 각종 인권침해사례 신고 접수 후 유관기관 이첩 또는 체류실태조사와 연계
    - ※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17개 외국어 상담서비스 제공
- 정부 내 민관 합동 인권침해 구제기구 운영(법무부)
  - 현행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의 기능 활성화
    - ※ 현재 법무부 및 전국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성격상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 내포
-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사건(2007. 2월) 이후 외국인 보호 과정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 고조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철저한 적법절차 준수 필요
- 보호외국인은 일상생활의 갑작스러운 단절, 강제출국이 예정된 상황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
  - 특히, 체불임금·미회수 전세금 등이 있는 경우 불안감은 가중
  - 협소한 보호실 내에 언어·문화 등이 다른 외국인들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어 갈등 발생 가능성 상당
- 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
  - 보호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의 경우 공간 협소, 운동공간 부족 등 환경 열악
  - 특수 외국어를 구사하는 고충상담관, 전문 경비·계호인력 부족

## 4-2-1. 보호 관련 적법절차 준수

### ① 인권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 보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법무부)
  - 법무연수원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 강화
- 인권담당관제 활성화(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지정된 인권담당관, 명예인권담당관(외부인사)을 통해 보호과정의 인권침해 여부 점검 강화

### ②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 권익보호 관련 법적 근거 상향(법무부)
  - 하위 법령에 규정된 보호외국인의 권익보호 관련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
    - ※ 관련규정 예 : 「외국인보호규칙」상의 청원에 관한 사항 등

## 4-2-2. 고충상담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

### ① 고충해결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 강화

- 보호외국인에 대한 고충처리 지속 추진(법무부)
  - 체불임금, 전세금 반환, 법률문제 등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권리를 구제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보호시설에서의 주요 고충상담 상황 〉

유 형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월
	체불 임금	건	3,025	954	1,267	6,561	12,969	5,763	5,540
	금액 (백만원)	2,781	927	1,546	6,622	13,031	6,261	6,143	5,136
의료구호(건)		164	213	358	384	305	326	543	426

-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법무부)**
  - 사무소별로 인근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 정기적 순회진료 실시
  - 의료자원봉사단의 유치를 통한 무료진료 서비스 제공

**②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활성화(법무부)**
  - 보호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프로그램을 발굴·활성화
  - 국가별·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 현재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사물놀이, 한국어강습, 심리상담 등 실시



### 4-2-3. 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

#### ① 보호시설 확충

- 영남 지역에 외국인보호소 신설 검토(법무부)
  - ※ 현재 전문 외국인보호소가 없는 영남권에서 타지역으로 보호외국인을 이송할 때 장거리 이동에 따른 외국인의 불편 상당
- 보호외국인 여가 활용 및 운동 시설 설치(법무부)
  - 전문보호시설 내 동감프로그램 실시 및 운동을 위한 공간 마련
- 외국인 보호실의 스프링클러 설치(법무부)
  - 화성보호소와 각 사무소 보호실에 설치

#### ② 경비·계호 업무의 전문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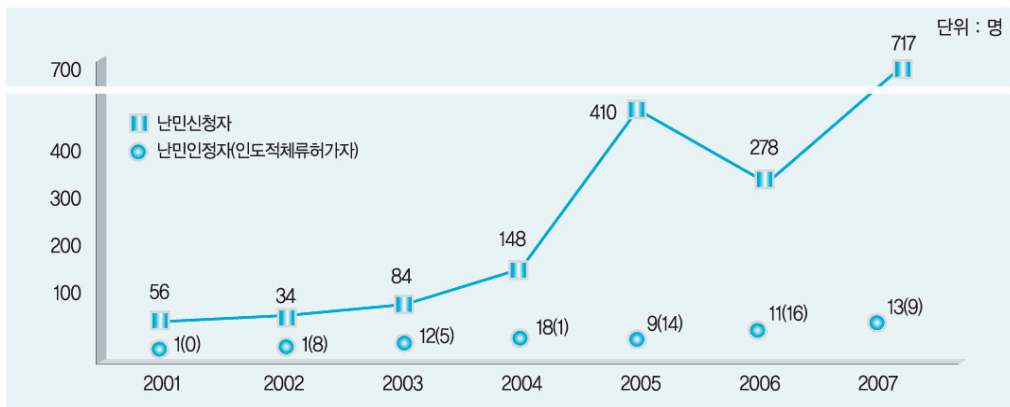
- 특수외국어 전공자, 무술유단자 확보(법무부)
  - 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등 특수외국어 구사 직원의 채용을 확대하여 보호 업무에 활용
  - 무술유단자를 특별채용하여 경비·계호 업무의 안전관리 강화
- 의료 전문인력 보강(법무부)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을 전문보호시설 외에 대규모 사무소 보호실에도 배치

## 배경 및 필요성

### ■ 난민신청자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난민 정책의 수립 필요성 대두

- 최근 난민신청자의 대거 발생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 · 지원체계는 변화된 정책수요 미 반영

〈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



법무부, 2007년

### ■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및 심사절차 개선 필요

- 난민신청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담심사 인력의 부족으로 심사기간의 장기화 및 심사의 질 저하 우려

※ '07년 난민신청자 수는 '01년 대비 13배 증가하였으나, 직제상 난민심사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하여 '07년말 난민심사 미처리자 1,155명 중 2년 이상 대기자는 286명, 1년 이상~2년 미만 대기자는 219명에 이룸

- 장기체류의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 '94년~'07년 총 난민신청자 1,804명 중 입국 후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난민 신청한 자가 449명

## ■ 난민인정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 필요

- 난민인정자는 국내 장기체류 가능성이 높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초기 적응 곤란
  - ※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 중 66%가 언어·한국사회 이해 및 직업능력 개발기회 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정착 곤란 (법무부 실태조사, '06. 1월)
- 난민지원시설 마련, 취업지원 등 종합적·실질적인 조기정착 프로그램 필요

## 추진 계획

### 4-3-1.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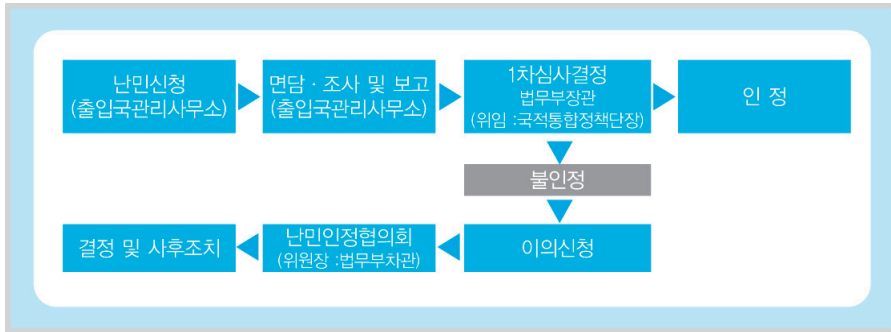
#### ① 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난민업무 전담부서 신설 및 확충 검토(법무부,행안부)
  - 난민업무가 집중되는 수도권사무소에 난민업무 전담부서 신설
  - 면담·조사와 심사결정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 ② 난민인정제도 개선

- 난민인정결정 권한의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임 검토(법무부)
  - 난민신청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결정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의 신속성 제고

〈 난민심사결정 절차 〉



- 난민신청의 남용방지 제도 신설(법무부)
  - 단순한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자,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자 등에게 지체 없이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4-3-2.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① 난민에 대한 초기 정착지원 대책 마련

- 난민지원시설 설립 추진(법무부)
  - 사회적응 교육, 법률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지원

〈주요 국가의 난민시설〉

국가	난민지원센터	총수용 능력	운영기관
일본	1	160명	정부
벨기에	1	3,904명	정부
덴마크	46	7,529명	정부 및 적십자사
프랑스	2	126명	정부
독일	32	20,500명	정부
이태리	2	1,300명	NGO(카톨릭)
영국	5	3,000명	정부
뉴질랜드	1	125명	정부

#### ②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 난민신청자 등의 선별적 취업 허용(법무부)
  - 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일정기간 내에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취업 허용

# 부록

1.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2. 자원 투자 규모



# 1.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 1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1-1-1.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①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촉진						
①우리경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확보를 위한 비자 도입						법무부
②기업수요에 부합토록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
③세계적 우수인재에 차별화된 혜택부여						법무부
②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공						
①우수인재의 근무처 이동 자유 확대						법무부
②우수인재 배우자의 취업절차 개선						법무부
③ 국적제도 개선						
①우수인재에 제한적 이중국적 용인						법무부
②우수인재의 일반귀화요건 완화						법무부
1-1-2.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① 고급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						
①Contact Korea 운영						지경부·외교부· 노동부·법무부
②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 도입						법무부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③해외 현지 채용박람회 개최						지경부·외교부· 교과부
④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활성화						중기청
⑤해외학자 유치 지원 강화						교과부
[2] 우수 유학생 유치 및 활용 지원 강화						
①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						교과부
②유학생 취업범위 확대						법무부
③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노동부·지경부
[3] 외국인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 지원						
①외국인 공직채용 확대						행안부·법무부
② 영어보조교사 비자발급 요건 완화						교과부·법무부

##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1-2-1. 지역별·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① 숙련생산기능인력 도입 체계 개선						
①거주(F-2)자격 요건 정비						법무부
② 숙련기능인력 도입 경로의 제한적 확대						
①전문대학 외국인유학생 제한적 취업 허용						법무부
1-2-2. 기업 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순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지원						
①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 도입						노동부
②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 여건 강화						노동부·법무부
③고용비용의 합리화						노동부
② 단순기능인력 도입 규모 결정 방식 개선						
①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 위원회의 연계 강화						법무부·노동부
②송출국가별 도입 규모 배정 시 불법체류율 반영 확대						노동부
③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교육의 강화						
①외국인근로자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환경 관리강화						노동부
②외국인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노동부
③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지원						노동부
④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지원						
①고충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법무부·노동부
②'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지자체 이양						노동부·행안부



###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1-3-1. 외국인 체류 지원 강화						
① 외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①"외국인종합안내센터" 3자 통역서비스						법무부
②한국어 교육과정 확대 운영						문화부
② 외국인을 위한 민원처리 서비스 강화						
①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등						법무부·노동부
1-3-2.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① 외국인을 위한 교통·주거환경 개선						
①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확대						국토부
②외국인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						국토부
② 외국인을 위한 복지·의료 환경 개선						
①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						복지부
②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진료편의 제공						복지부
③ 외국인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①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교과부
②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교과부
④ 외국인을 위한 문화·여가 환경 개선						
①문화시설의 다양성 부족 등 완화						문화부
②문화 관련 정보 취득 어려움 해소						문화부
③취약계층 외국인의 여가환경 개선						문화부

## 2 질 높은 사회통합

###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2-1-1. 다문화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①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						
①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						교과부·복지부
②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교과부
③다문화이해 관련 교재·자료 발간						교과부
④유·초·중등 교사 등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교과부·문화부
② 사회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						
①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부·복지부
②지자체 주민·공무원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행안부
③다문화교육 강사 확충						문화부·법무부·복지부
③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①다문화 관련 포럼·세미나 등 개최						행안부·법무부·문화부·복지부
②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 등 추진						문화부·법무부·복지부·교과부
2-1-2. 참여 및 소통 강화						
① 외국인 지역사회 참여 확대						
①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행안부·법무부
②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①다문화행사 등의 세계인 주간 실시						법무부·행안부
②지역별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문화부

##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2-2-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①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강화						
①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이수제 실시						법무·교과·문화·복지·행안·농식품부
②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교과부·문화부·복지부·행안부
②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						
①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 제공						행안부
②다국어판 정보 매거진 발간·배포						복지부
③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 구축						복지부
④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법무부·복지부
③ 보육 등 사회서비스 강화						
①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복지부
②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복지부
④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①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 강화						행안부·복지부 법무부·문화부
②지역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행안부·복지부·법무부
⑤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①자조모임 지원 및 정책모니터단 운영						법무부·복지부
②배우자 등 자조모임 운영, 교육 실시						복지부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2-2-2.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① 취업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강화						
①결혼이민자의 자립모델 개발·보급						노동부·복지부
②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노동부·복지부· 행안부
②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영농정착지원 강화						
①생활농업인으로서의 정착지원 강화						복지부
②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정착 지원						농식품부
2-2-3.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① 위장결혼 예방 및 단속 강화						
①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 강화						법무부
②결혼이민비자 체계 개편 검토						법무부
③입국 후 생활실태 모니터링 강화						법무부
③위장결혼 피해방지 활동 강화						법무부
② 결혼이민 과정의 불법행위 및 인권침해 방지						
①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조기 정착						복지부·법무부
②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복지부
③인권침해사례 실태조사 등						법무부
③ 결혼 전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증진						
①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실시						여성부·법무부· 복지부
②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실시						복지부
③예비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 제공						복지부·외교부

##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b>2-3-1.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b>						
<b>①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b>						
①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교과부·복지부
②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						교과부·문화부·복지부
③한국어 및 기초학습 교재 개발 등						교과부·문화부
<b>② 이민자 자녀 학교생활 지원</b>						
①다문화교육 지원체제 강화						교과부
②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교과부
③다문화교육 담당 전문가 양성·배치						교과부·문화부
④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교과부
⑤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진로상담 강화						교과부
<b>③ 이민자 자녀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b>						
①학교 단위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행복교실” 운영						교과부
②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교과부
<b>2-3-2.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b>						
<b>① 이민자 자녀 사회적응 지원</b>						
①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 초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						복지부
②학교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기회 확대						교과부
③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모델 개발·확산						복지부
④다문화청소년 종합정보 제공 강화						복지부
⑤다문화청소년 전문가 양성						복지부
<b>② 이민자 자녀 자립능력 배양</b>						
①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대상에 이민자 자녀 포함						복지부
②이민자자녀를 다문화교육 관련분야에 활용						교과부

##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2-4-1. 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지위와 제도 정비						
① 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지위 강화						
①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법무부
②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확대						법무부
③ 일정조건 하에 이중국적 보유 용인 추진						법무부
② 중국구소련 동포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① 연간 입국인원의 합리적 조절						법무부·노동부
②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으로의 취업 장려						법무부·노동부
③ 취업실태 파악 및 관리강화						법무부·노동부
③ 동포의 입국문호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						
① 사증발급 관련 브로커 개입 차단						법무부
② 입국 전 취업정보 제공						노동부·외교부
③ 동포 취업관리 강화						법무부·노동부
2-4-2.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						
① 동포의 국내 생활환경 개선						
① 국내 체류 관련 제도 개선						법무부
② 체계적인 법률지원 사업 추진						법무부
② 동포의 사회적응 지원						
① 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운영						법무부
②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강화						행안부
③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						노동부

### 3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3-1-1.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① 비자발급 단계의 불법체류 사전예방 대책 강화						
①비자발급업무 시스템 연계 확대						외교부·법무부
②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추진						외교부·법무부
②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조사 역량 강화						
①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법무부
②조사단속 인프라의 연차적 보강						법무부
③정부합동 단속 정례화						법무부·노동부· 경찰청·해양경찰청
④불법체류대책 5개년 계획 수립						법무부, 관계부처 공동
⑤ 정부부처간 불법체류정보 공유						법무부·복지부 노동부·경찰청
③ 불법고용을 할 수 없는 사회 환경 조성						
①고용주에 대한 지도·점검 등 강화						노동부·법무부· 중기청
②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법무부
3-1-2.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리 강화						
① 집단거주지역 내 생활환경 개선						
①집거지 개발 등 사회 안정화 지원						행안부
② 집단거주지역 내 외국인 관리체계 강화						
①행정기관 정례회의 활성화						법무부· 행안부 등
②이주민 자율조직의 건전한 육성						행안부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③정기적인 합동 실태조사						행안부(지자체)· 식약청
3-1-3.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						
□ 일탈행위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						
①예술·홍행자격 소지자 관리 강화						법무부
②유학생·어학연수생 관리 강화						교과부·법무부
③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유학생 관리현황 반영						교과부



###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정보 관리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3-2-1.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 및 위험외국인 관리						
① 국경관리 과학화 및 선진화						
①자동출입국심사제도 도입						법무부
②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검토						법무부
② 총체적 외국인관리능력 강화						
①외국인 지문정보 등 수집 및 활용 추진						법무부
②통합정보 분석체계 구축 등 검토						법무부· 관계부처 공동
③전자외국인등록증 발급 검토						법무부
④외국인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검토						법무부
3-2-2.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① 국가간 정보 공유 활성화						
①인터폴 도난분실여권정보 연계 활용						법무부·외교부· 경찰청
②RMAS 가입 추진						외교부·법무부
② 양자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①이민당국간 고위급 회의 확대						법무부
②이민분야 국제회의 참여 확대						법무부
③ 국제 인적교류 확대						
①이민연락관 파견 확대 검토						법무부
②이민당국 등과 직원교류 확대 검토						법무부
③개도국 이민당국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 3-3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 업무 수행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3-3-1. 국적 업무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① 귀화국적회복 절차의 신속 진행						
①국적 관련 시스템 정비						법무부·대법원·경찰청
②필기시험 지방사무소 위임						법무부
② 귀화적격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①필기시험 문제출제 전문기관에 위탁						법무부
②기본소양에 관한 표준교재 발간						법무부
3-3-2. 귀화허가 시 검증기능 강화						
① 국적제도 개선을 통한 검증기능 강화						
①국적취득 심사 강화						법무부
②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 검토						법무부
② 귀화적격심사 과정에서 검증기능 강화						
①본국에서의 범죄경력 여부 심사						법무부

## 4 외국인 인권옹호

### 4-1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4-1-1.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						
① 외국인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①차별시정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법무부
② 차별적 제도·관행의 개선						
①차별시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법무부
4-1-2.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 강화						
①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①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전국 지원시스템 구축						여성부·법무부·복지부
②가정폭력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						여성부
③인권침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원						법무부·노동부
② 정부 내 구제기능의 실질화						
①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인권 침해 신고 접수						법무부
②정부 내 인권침해 구제기구 운영						법무부

## 4-2 외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강화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4-2-1. 보호 관련 적법절차 준수						
① 인권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①보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법무부
②인권담당관계 활성화 등						법무부
②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①권익보호 관련 법적 근거 상향						법무부
4-2-2. 고충상담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						
① 고충해결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보호외국인 고충처리 지속 추진						법무부
②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법무부
②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①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활성화						법무부
4-2-3. 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						
① 보호시설 확충						
①영남지역 외국인보호소 신설 검토						법무부
②여가 활용 및 운동 시설 설치						법무부
③보호실 스프링클러 설치						법무부
② 경비·계호 업무의 전문성 제고						
①특수외국어 전공자, 무술유단자 확보						법무부
②의료 전문인력 보강						법무부

####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과 제	'08	'09	'10	'11	'12	소관 부처
4-3-1.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체계 구축						
① 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확충						
①난민업무 전담부서 신설·확충 검토						법무부·행안부
② 난민인정제도 개선						
①난민인정결정 권한 일부 지방사무소 위임						법무부
②난민신청의 남용방지 제도 신설						법무부
4-3-2.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① 난민에 대한 초기 정착지원 대책 마련						
①난민지원시설 설립 추진						법무부
②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①난민신청자 등의 선별적 취업 허용						법무부

## 2. 재원 투자 규모

### ■ 2008~2012년 중 총 투자규모는 약 6,127억원으로 추계

- 개방적 이민허용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에 2,168억원(35.4%),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에 3,405억원(55.6%), 질서 있는 이민행정 분야에 341억원(5.6%), 외국인 인권옹호분야에 213억원(3.4%)

※ 투자규모는 '09년 국회 제출 정부 예산안 및 '09~'13년 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작성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계	'08	'09	'10	'11	'12
계			6,126.93	828.29	1,007.54	1,285.98	1,466.73	1,538.39
국	일반회계		2,635.58	343.12	467.72	536.19	621.50	667.05
	특별회계		185.00	185.00	-	-	-	-
비	기 금		2,331.58	161.72	398.33	538.51	606.94	626.08
	소 계		5,152.16	689.84	866.05	1,074.70	1,228.44	1,293.13
지 방 비			947.77	111.45	141.49	211.28	238.29	245.26
기타(민자 등)			27.00	27.00	-	-	-	-

분 야 별	개방적 이민허용	2,168.09	373.24	431.45	436.24	457.57	469.59
	질 높은 사회통합	3,405.29	385.52	490.25	743.01	879.10	907.41
	질서 있는 이민행정	340.50	60.50	44.00	58.00	76.00	102.00
	외국인 인권옹호	213.05	9.03	41.84	48.73	54.06	59.39

※ '09년 이후 재원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임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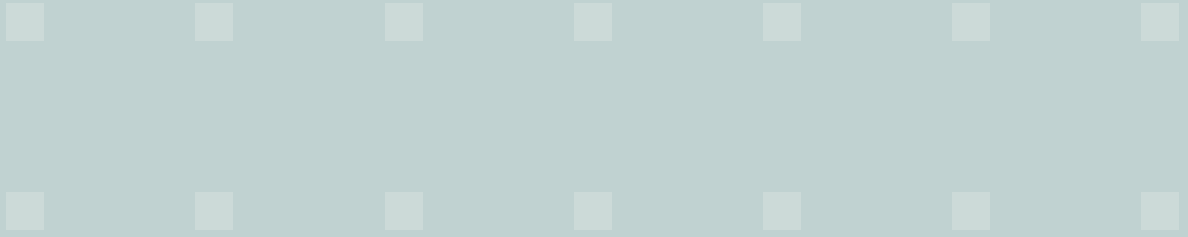
발행일 : 2008. 12

발행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락처 : (02)500-9025 Fax : (02)500-9026

기획·인쇄 : (주)바인텍 (02)2285-527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